

지 방 의 회 법 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92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신정훈 · 황명선 · 김문수
강득구 · 이광희 · 강준현
권향엽 · 전진숙 · 문금주
장종태 · 김영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 다. 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의·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음(안 제4조).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과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안 제13조).
- 마. 의장은 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 의회 자체감사를 수행하며, 자체감사가 어려운 경우 집행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바. 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18조).

- 사.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중립의무 및 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 아.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및 부적법 수익계약 등을 예방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자.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의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 차. 의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8조).
- 카.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신설하고,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74조).
- 타. 의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활동 및 주민의 모니터단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7조부터 제78조까지).
- 파. 의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음(안 제80조).
- 하.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7조).

지방의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의회(이하 “시·도의회”라 한다)
2. 시·군·자치구 의회(이하 “시·군·구의회”라 한다)

제3조(기관구성 형태에 따른 의회 운영의 특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① 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의·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 범위·한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② 의회는 조례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마련하고, 조례안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견수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에 앞서 적법성 및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행 이후에는 조례의 실효성·적정성 및 현장 적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례 정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의회의 조직구성

제5조(의장·부의장) ① 의회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1명의 의장을 둔다.

② 의회는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시·도의회는 2명의 부의장을, 시·군·구의회는 1명의 부의장을 둔다.

제6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이 제3항에 따른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부의장이 2명인 의회에서 직무를 대리할 부의장의 순서는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보궐선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제11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6조제1항, 제8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 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의 겸임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무처 등의 설치와 사무직원)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사무국·사무과(이하 “의회사무기

구”라 한다)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기구의 장”이라 한다)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과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15조(임면) ① 의장은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 또는 면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훈련·복무·징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인사교류협의회 등) ① 같은 시·도 내 시·도의회와 시·군·

구의회 및 시·군·구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소속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회 자체감사) ① 의장은 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기구와 의회사무기구의 장 및 사무직원의 직무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의회 자체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자체감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회 자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회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의회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① 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의장은 의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회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의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을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의원

제19조(선거와 임기) ① 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③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0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해당 의회 사무기구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무사항)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2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의회는 소속 직원 중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공개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물가수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원의 직무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에 이미 지급한 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구금된 의원이 법원의 무죄·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2.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와 제6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직무 외 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지원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신

고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한 금액을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에서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읍면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③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거나, 의원이 당선되거나, 의원이 임기 중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

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6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6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⑩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9항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⑪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28조(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나.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8.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 및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체결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의 내용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명단

10.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재산사항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29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

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의장과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의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및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장 및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장 및 의원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

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전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과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제30조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과 해당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관계) ① 의원이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해충돌 방지 및 수의계약의 적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실태조사 등을 끝내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의회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이 이 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의회”로, “소속 공직자”는 “의원”으로 보며, 징계의 요구와 절차 등은 제9장에 따른다.

제5장 권 한

제33조(의회의 의결사항)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장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는 자료제출 등 인사청문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

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37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및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등은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위원회와 교섭단체

제39조(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제44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4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불신임의 발의·의결정족수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은 “재적위원”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4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본회의의 의결
2.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
3.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4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전문가의 활용)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교섭단체) ① 의회에는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장 회의

제49조(회의) ①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집회일과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의장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일정이 새로 작성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임시회) ①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거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되는 날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초의 임시회 소집은 의원 임기 개시일에 최초의 임시회를 소집하는 자가 공고한다.

⑥ 그 밖에 임시회의 소집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정족수)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회의 참석 인원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② 회의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4조(표결방법) ① 본회의(제49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8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10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66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74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표결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여야 한다.

제55조(의안의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의된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되어

야 한다.

④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⑥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56조(조례안 예고) ①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제55조에 따라 발의되는 의안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다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8조(조례 입법평가) ① 의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시행 효과 및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는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직 등의 사유로 지방의회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할 조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개정안 제출 등 조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입법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조례 입법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9조(회의의 원칙) ①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60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61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2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3조(회의에 관한 의회규칙) 의회는 회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64조(의원의 사직) 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의원의 퇴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즉시 퇴직한다.

1.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인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66조(자격상실 의결)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인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7조(결원의 통지) 의장은 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장 질서와 징계

제6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6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징계) 의회는 의원이 이 법·「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요구) ①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69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4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제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의 기간에 해당 의회의 폐회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5조(징계의 효력) ① 제72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경고 및 사과): 월액의 2분의 1을 징

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등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제74조제1항제3호(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1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74조제1항제4호(9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제72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76조(징계에 관한 의회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제77조(의회에 대한 주민참여) ① 의회는 해당 의회의 운영과 입법·정책활동 등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홍보·교육 등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의회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주민의 의회 감시 등) ① 주민은 해당 의회의 운영과 입법·정책활동 등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활동(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단체(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모니터단은 정치적 중립성 및 그 활동의 독립성·객관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회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9조(공청회) ① 의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청문회) ① 의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취회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청원) 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2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3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아닌 사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회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5조(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① 의회는 주민의 의정참여와 감시 및 의회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 의회의 조직, 재무 및 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의정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조례 등 자치법규
2. 의회의 조직, 재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안 발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4. 친선결연·공무국외출장 등 국내외 교류·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5.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및 의원 연구활동 등 역량 개발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의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의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방의정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86조(인공지능 등의 활용) ① 의장은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등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간 통합적 연계 등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의회의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7조(교육·연수) ①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교육·연수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제8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89조(의회규칙) 의회는 의사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과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 행위나 의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의회의 행위나 의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의회법」 제63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의 의회와 집행기관”을 “「지방자치법」의 의회와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법」의 의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법」 제23조”로, “「지방자치법」 제64조”는 “「지방의회법」 제39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지방의회법」 제22조”로 한다.

제42조는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을 “「지방의회법」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42조제5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의회법」 제39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회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를 “「지방의회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8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지방의회법」 제34조”로 한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법」”으로 한다.

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을 “「지방의회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의회법」 제3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의회법」 제33조제1항제8호”로 한다.

⑦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을 “「지방의회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68조·제102조 및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25 및 「지방의회법」 제13조·제42조”로 한다.